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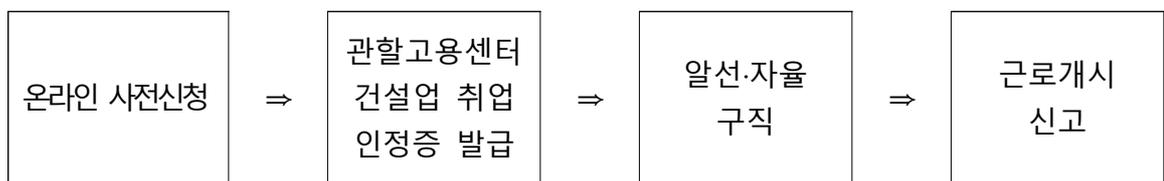
# 건설업 외국인력 취업 및 고용허가제 업무지원 방안 안내

## ① 건설업 특례고용(H-2) 외국인력 취업 제도 개선

### ○ 신규 외국국적동포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

- 온라인(<http://eps.hrdkorea.or.kr/h2>)으로 일반교육 사전 접수
- 일반교육 접수시 「건설업 취업 희망」을 체크하여 신청하면 일반교육 수료 할 때 별도 교육 없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

### ○ 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 절차



### ○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연장 절차

- (1) 온라인(<http://eps.hrdkorea.or.kr/h2>)을 통해 건설업 취업 인정증 사전신청\*
  - \* 건설업 취업 교육장별로 일일 발급신청 가능인원이 정해져 있어, 사전 확인 후 신청 필요

- (2) 관련 서류\*를 지참하여 관할고용센터 해당 교육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 교육 없이 건설업 취업인정증 유효기간\*\* 연장

\* 만료예정 취업인정증과 외국인등록증, 여권

\*\* 신규발급 또는 연장 : 1년

※ 건설업 취업인정 쿼터(특례고용허가 H-2 쿼터 5.5만명+α)는 유지

### ○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연장 신청기간

- (연장 신청) 효력 만료일 60일전부터 효력만료일까지 가능

※ 연장 신청기간 동안 다음 사유로 신청 못한 경우 출국 또는 불가피한 사유 해소일 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, 효력만료일부터 1년 경과시 연장 신청 불가

1. 출국하여 국내에 없는 경우: 법무부 발행 「출입국사실증명원」 제출
2.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 : 병원진단서 제출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: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

## ② [고용노동부] 고용허가제 업무지원 방안

### ○ 고용센터 방문없는 민원업무 처리 지원

- 방문신청 필요업무\*는 관할센터 유선전화·FAX 등 처리 가능

\* <사업자> 사업장 정보변동신고 (고용승계, 지사간 이동)

<근로자> 사업장 변경신청, 출국예정신고, 특례고용 외국인(H-2) 구직등록 등

- 온라인 신청가능 업무\* EPS(www.eps.gp.kr) 홈페이지 처리 가능

\* 고용허가 신청·발급,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, 고용변동신고, 근로개시신고 등

### ○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시기 조정 지원

- 입국절차 진행 전 관할 고용센터 신청시 송출국가 협의

※ 사전협의 없이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인도 거부시 고용제한 등 불이익 처분

- 코로나19로 입국하지 않아 근로계약 해지된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 구직자(E-9) 우선 알선 또는 다른 국가 근로자 신규 알선

### ○ 재입국특례자\* 취업활동기간 50일 연장('20. 2.17부터)

- 중국, 태국, 베트남 등 3개국 국적 외국인근로자

\* 취업활동기간 1개월 이내인 자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서 발급자

### ○ 사업장 변경신청 외국인근로자\*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('20. 2.29부터)

- 구직활동기간(3개월) '20. 2.28 ~ '20.4.30 기간만큼 일괄 연장 조치

\* 구직중인 외국인 근로자 및 2.28~ 4.30까지 구직등록 외국인 근로자